

의안번호	2203091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4. 11. 00.
추계번호	24D29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산정 시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급여액 산정(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10	42	118	192	263	307	312	304	303	216

주: 1.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급여액 산정(안 제9조제1항)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이 매년 5명이 발생하고 대표유족은 여성 50세로 가정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첫연금액 평균액 등을 활용하여 특별진급 반영 시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3. 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장기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어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1항(급여액 산정의 기초) 단서 신설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제1항(급여액 산정의 기초) 단서 신설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급여액 산정 시 진급된 계급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증가로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순직유족연금)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며 가산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망조위금)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이 매년 5명이 발생하고 대표유족(유족연금수급자)은 50세 여성으로 가정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은 총 25명으로 연평균 5명이고, 유족연금수급자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연령은 약 50세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3월에 작성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보고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상승률, GDP디플레이터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연금급여의 장기적인 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하고 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순직유족연금

- 개정안은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순직유족연금 산정 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진급한 순직 군인이 매년 5명 발생하고 연금지급률은 57%, 대표유족은 50세 여성으로 가정하고 1인당 증가하는 순직유족연금액은 국방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수급자 수) 5명의 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국방부의 유족연금수급자 사망률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증가액) 수급자 1인당 증가액은 2026년 기준 연간 156만원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3,227,570원이고 개정안에 따라 진급된 계급 적용 시 3,502,960원
 -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은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연도별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연금지급률 57%(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평균 연금지급률, 국방부 자료)를 적용하여 첫 연금액을 산출하며 이후 수급기간 동안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
 - 연도별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가 수급자 1인당 증가액이고 2026년 대상자의 경우 연간 15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2093년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연간 12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억 1,4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특별진급을 반영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수급자 수 (A, 명)	2026	5	5	5	5	4	2	0	0	0	-
	2030	-	5	5	5	5	3	0	0	0	-
	2040	-	-	5	5	5	5	3	0	0	-
	2050	-	-	-	5	5	5	5	3	2	-
	2060	-	-	-	-	5	5	5	5	5	-
	2070	-	-	-	-	-	5	5	5	5	-
	2080	-	-	-	-	-	-	5	5	5	-
	2090	-	-	-	-	-	-	-	5	5	-
	2093	-	-	-	-	-	-	-	-	5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026	156	157	161	164	167	171	174	177	179	-
	2030	-	153	156	159	163	166	169	172	174	-
	2040	-	-	148	150	153	156	160	163	164	-
	2050	-	-	-	146	149	152	155	158	159	-
	2060	-	-	-	-	142	144	147	150	151	-
	2070	-	-	-	-	-	137	140	143	144	-
	2080	-	-	-	-	-	-	132	135	136	-
	2090	-	-	-	-	-	-	-	125	126	-
	2093	-	-	-	-	-	-	-	-	123	-
추가재정소요 (연도별 A×B의 누적 합계, 백만원, 2024 년 불변가격 기준)		8	40	116	190	261	305	310	302	301	214

주: 1. 5명의 순직유족연금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국방부 유족연금수급자 사망률 자료)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를 추계하면, 2026년 수급자 5명은 2075년경에 모두 사망하여 수급자 수는 0명

2. 증가액의 경우, 최초연도는 특별진급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고 이후 두 번째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최초 연금액 증가액이 2026년 156만원에서 2093년 12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망조위금

- 개정안은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사망조위금 산정 시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특별진급한 순직 군인이 매년 5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별진급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증가액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 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이 매년 5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증가액) 2026년 기준 1인당 증가액은 46만원,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순직 승인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3,227,570원이고 개정안에 따라 진급된 계급 적용 시 3,502,960원
 - 추계기간 동안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배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증가액에 2를 곱하여 산출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조위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특별진급 반영한 사망조위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 2026~2093년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대상자 수 (A, 명)	5	5	5	5	5	5	5	5	5	—
증가액 (B, 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46	45	43	43	41	40	39	37	36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2024년 불변가격 기준)	2	2	2	2	2	2	2	2	2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억 1,600만원(202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9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순직유족연금	8	40	116	190	261	305	310	302	301	214
사망조위금	2	2	2	2	2	2	2	2	2	2
합계	10	42	118	192	263	307	312	304	303	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보수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전망되었으나, 향후 실제 공무원보수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